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은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5
----------	------

발의연월일 : 2024. 3. 5.

발의의원 : 김은영 의원,

신동윤 의원, 박주용 의원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3.12.14 일부개정·시행) 별표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가 확대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를 근거로 구성·운영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통보한 의정활동비 상향 심의 결과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월 1,100,000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 월 1,500,000원(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으로 확대(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0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의 정 활 동 비
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개정규정은 2024년 1월분 의정활동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table><tr><td>의정활동비</td></tr><tr><td>월 1,1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td></tr></table>	의정활동비	월 1,1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별표 1】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제2조 관련) <table><tr><td>의정활동비</td></tr><tr><td>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td></tr></table>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의정활동비					
월 1,1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900,000원, 보조활동비 200,000원)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의정자료수집·연구비 1,200,000원, 보조활동비 300,000원)					

□ 「지방자치법(법률)」 (2023.3.21. 일부개정, 2023.9.22.시행)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填)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2023.12.14. 일부개정·시행)

제33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